

대구지방법원 2021. 3. 19 선고 2020가단13949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19.

주 문

1.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,
가. 소외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0. 7. 2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3. 결론

판사 신종화

판사신종화

별지